

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34,000,000	13,020,000
일반회계		331,620,000	9,948,600
특별회계		102,380,000	3,071,400
기타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102,380,000	3,071,400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792,000	23,760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90,000	8,70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936,000	58,08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82,000	5,460
	기반시설특별회계	65,000	1,950
	치수사업특별회계	1,900,000	57,000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11,000	3,330
	성주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64,313,000	1,929,39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540,000	136,2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8,251,000	847,53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사고이월사업조서는 별첨 "사고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301,362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